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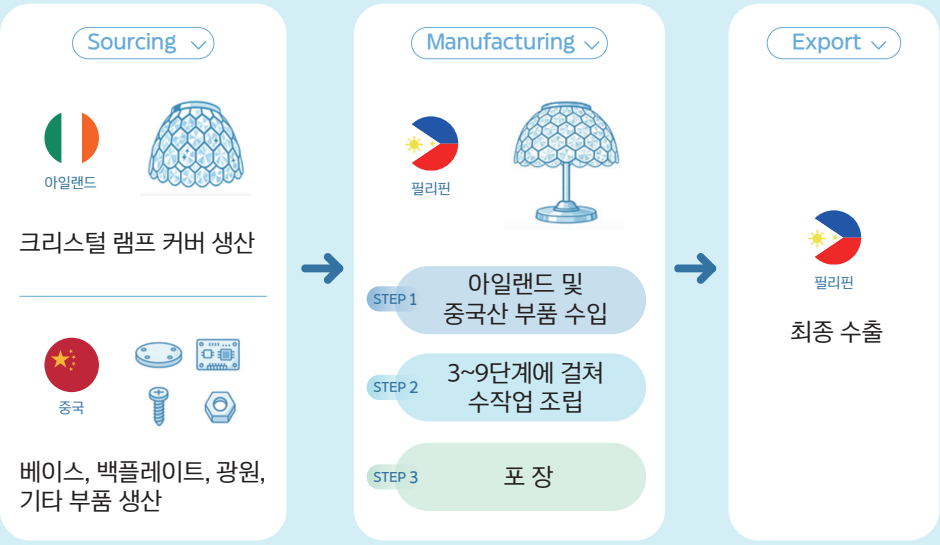



크리스털 램프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7195 (2026.01.13.)
- 쟁 점 사 항: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필리핀
- 최종 원산지: 아일랜드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빛을 밝히는 용도 및 실내 장식용	
재료	 아일랜드	• 크리스털 램프 커버
	 중국	• 베이스 • 백플레이트 • 기둥 • 광원(LED가 장착된 PCBA) • 기타 부품(너트, 나사 등)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 <p>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sourcing and manufacturing process for a crystal lamp. It is divided into three main stages: Sourcing, Manufacturing, and Export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ourcing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일랜드 (Ireland): 크리스털 램프 커버 생산 (Production of crystal lamp cover). 중국 (China): 베이스, 백플레이트, 광원, 기타 부품 생산 (Production of base, backplate, light source, and other parts). Manufacturing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TEP 1: 아일랜드 및 중국산 부품 수입 (Import of Irish and Chinese parts). STEP 2: 3~9단계에 걸쳐 수작업 조립 (Hand assembly in 3~9 stages). STEP 3: 포장 (Packaging). Export: 필리핀 (Philippines) 최종 수출 (Final export to Philippines). 	
상세 공정	 아일랜드	• 크리스털 램프 커버 설계 및 생산
	 중국	• 베이스, 백플레이트, 광원, 기타 부품 생산
	 필리핀	• 아일랜드 및 중국산 부품 수입 • 3~9단계에 걸쳐 3~14개의 부품 결합 공정 수행 • 납땜, 용착과 같은 복잡한 기계가공 없이 드라이버만으로 수작업을 통해 생산

III 판정 결과

《신청인의 주장》

- ⊙ 크리스털 램프 커버가 이 조명기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품이며, 실제 최종 소비자 또한 기능적인 목적보다 장식용 및 고급 제품으로서 이를 구매한다고 주장
- ⊙ 아일랜드산 크리스털 램프 커버가 해당 램프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므로,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상 램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임

《CBP의 판정》

- ⊙ 크리스털 램프 커버가 조명기구의 외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조명기구에 독특하고 우아한 외관을 부여하므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임
- ⊙ 또한, 크리스털 램프의 제조공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정교한데 비해, 중국 및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비교적 단순함

→ 무역구제조치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아일랜드

IV 시사점

- ⊙ CBP는 조명기구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, 일반적으로 광원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며, PCBA에 의해 광원의 역할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PCBA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함
- ⊙ 다만, 위 사례와 같이 최종 제품의 특성 및 용도가 빛을 밝히는 기능적 요소에 중점을 두기 보다 실내 장식 등과 같은 심미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, 해당 특성 및 용도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(크리스털 램프 커버)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

조명기구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차량용 LED 램프
사례번호	HQ H304910 (2020.04.21.)
쟁점사항	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멕시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전자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 -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 생산 • 중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멕시코산 PCBA 수입 -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등 최종 조립 공정 수행
판결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BP는 램프의 핵심 구성요소는 광원이며, 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된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은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,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정 •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, 커넥터 연결 등 단순 공정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멕시코로 판정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